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0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송갑석・이용선・이개호

정춘숙 · 임종성 · 김윤덕

최인호 · 이규민 · 박 정

이장섭 · 이성만 · 안민석

인재근 · 조오섭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정보공개 청구 심사가 이루어진 67만여 건 중 63만 8천여 건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공공기 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

그러나 향후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 음에도, 현재 제도의 미비와 소극적인 정보공개 관행으로 인하여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법적 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 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 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법률 및 명령의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 다.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이더라도 가명처 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 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14조제2항 신설).
- 라.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요 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 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및 제2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과정"을 "과정(이하 이 조에서 "결정 및 검토 과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결정 및 검토 과정"으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결정 및 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고, 결정 및 검토 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 제9조제3항 중 "기준"을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 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공개 세부 기준의 점검 및 개선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제출받은 해의 다음 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료 예정일 등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가명처리를 통한 정보 부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로서 이 법 시 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제9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
	<u>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u>
	<u>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u>
	<u>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u>
	한다. 이하 같다)의 목록을 작
	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	1
임한 <u>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u>	<u>명</u> 령

칙 • 현	헌법재판	소규칙	• 중양	! 선거
관리유	의원회규	칙·대·	통렁렁	및
조례를	로 한정형	<u>한다)</u> 에	따라	비밀
이나	비공개	사항으	로 구	구정된
정보				

- 2. ~ 4. (생략)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 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 정 또는 내부검토 <u>과정</u>에 있 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 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 4. (현행과 같음)
J.	
	과정(이
	<u>하 이 조에서 "결정 및 검토</u> 과정"이라 한다)
	<u> </u>
	, 거기 미 기도 키기
	<u>결정 및 검토 과정</u>
	- 1 1 0 구 - 1 4 구 1 시
	<u>제13조제4항에</u>
	따라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결정 및 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u>안내하고, 결정 및 검토 과정</u>
•	
).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신 설>

<u>다.</u> ~ <u>마.</u> (생 략)

7. • 8. (생략)

- ② (생략)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 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 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u>기준</u>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

<신 설>

<u>-</u>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
<u> </u>
<u>라.</u> ~ <u>바.</u>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u>7</u>]
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
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
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
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
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
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

제14조(부분 공개) (생 략)

<신 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 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 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 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현행 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제4 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공개 세 부 기준의 점검 및 개선 결과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 검 및 개선 결과를 제출받은 해의 다음 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u>.</u>